

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15	5	1985. 3. 2	총재최창탁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등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제1항 <별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구 분	이 율	
	현 행	개 정 안
1. 정기에금	(생략) 연 6.0%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1인당 2,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현행과 같음) 연 6.0% (실명의 개인에 한하여 1인당 3,000만원 이내. 다만, 이자원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2. 저축예금		
3. 가계종합예금	(생략)	(현행과 같음)
4. 보통예금		
5. 별단예금		
6. 당좌예금		
7. 정기적금		
8. 상호부금		
9. 상업어음일반 매출		

제외관계 한국은행법 제 7 조 및 제 65 조
법규조항

제외취지 최근 제 2 금융권의 급속한 업무확대 및 이에 따른 단기금융자산의
다양화 추세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증대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의 은행이용 생활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저축예금의 최고
예치한도를 인상 조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1. 관계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 7 조

-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
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2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 65 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